

## 영동군 노인 백내장 및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영동군 노인 백내장 및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2월 26일  
영 동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영동군 노인 백내장 및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제정이유

- 2024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조례 제정 취지를 고려하여 지원 신청 전 수술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도 해당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지원 제외 대상 중 지원 결정 전 발생 의료비 내용 삭제(안 제4조)
- 지원 결정 통보 후 3개월 이내 수술 의무 내용 삭제(안 제7조)

#### 4. 의견 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 영동군의회
- 전 화 : 043)740-3088, FAX : (043)740-3039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입법예고 대상 : 「영동군 노인 백내장 및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견 제출자 성명(법인·단체명) :
- 의견 제출자 주소 :
- 의견 제출자 전화번호 :

조례안 내용	의견(찬·반 의견 및 사유)	비고

영동군 노인 백내장 및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동군 노인 백내장 및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지원 결정) 군수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3조 지원 대상 기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앞면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에 관한 적용례) 2024년 1월 1일 이후 백내장 및 무릎인공관절 수술을 한 사람에 한하여 개정조례를 소급하여 적용한다.

## 의료비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자(대리인)	성명	대상자와의 관계	
	연락처		
지원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남 <input type="checkbox"/> , 여 <input type="checkbox"/> )
	주소	연락처	
구 분	<input type="checkbox"/> 백내장 수술 <input type="checkbox"/> 무릎인공관절 수술		
비 고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고 의료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동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진료소견서(또는 진단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1부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
------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지원범위) 지원범위는 신청 질환과 관련된 급여부분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p> <p>1. (생   략)</p> <p>2. <u>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u></p> <p>3.·4. (생   략)</p>	<p>제4조(지원범위) -----</p> <p>-----</p> <p>-----</p> <p>-----</p> <p>-----.</p> <p>1. (현행과 같음)</p> <p><u>&lt;삭   제&gt;</u></p> <p>3.·4. (현행과 같음)</p>
<p>제7조(지원 결정) ① <u>군수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3조 지원 대상 기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u></p> <p>② <u>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술하여야 한다.</u></p>	<p>제7조(지원 결정) <u>군수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3조 지원 대상 기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u></p>